

사번®

www.4bbun.co.kr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

법조문



출판사: 4뿐

ISBN: 979-11-92669-22-9(PDF)

정가: 400원

법령을 읽어 보시는 것은 시험범위를 숙지하고 계신 경우에만 도움이 됩니다.  
시험범위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시간낭비입니다.  
민법의 내용은 시험범위가 아닌 부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신의성실」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미성년자의 능력」

-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영업의 허락」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제2항을 준용한다.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본인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유언을 하거나 유언을 취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주소」

-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 「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관리인의 개입」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입할 수 있다.

### 「관리인의 직무」

-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실종의 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의 신고」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실종의 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사단법인의 정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

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축자의 방법은 전항 때에는 그 방법

- 8. 이사의 성명, 주소
-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법인의 등기사항」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인의 등기사항)

-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법인의 등기사항」제2항에 기재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인의 등기사항)

-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변경등기」

「법인의 등기사항」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등기사항)

-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기간의 기산」

「사무소이전의 등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사무소이전의 등기)

-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법인의 등기사항」제2항에 기재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사의 사무집행」**

-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사의 대표권」**

-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사원의 결의권」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 【기타 규정】

-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해산사유」

-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가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잔여재산의 귀속」

-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 「해산등기」

- 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② 「변경등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변경등기)

「법인의 등기사항」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②「변경등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 「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채권신고의 공고」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

① 청산인으로서 임명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③ **채권선고의 공고**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 (채권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 「준용규정」

「이사의 사무집행」제2항, 「이사의 대표권」 내지 「이사의 대리인 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이사의 임무해태」 및 「임시총회」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 (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이사의 대표권)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재산목록과 사원명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총회의 의사록**」과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파산신청**」, 「**청산중의 파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채권신고의 공고**」, 「**청산중의 파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 (총회의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채권신고의 공고**」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청산중의 파산)

- ①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 ③ 「**채권신고의 공고**」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 (채권신고의 공고)

-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부동산, 동산」

-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가, 등」

-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천연과실, 법정과실」

-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 「과실의 취득」

- ①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②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대리행위의 효력」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 무가 있다.

##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대리권의 소멸사유」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무권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추인의 방법, 효과」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기사를 그 쓰는 법률에서는 예외규격, 그후칙 단기적인 법규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추인의 요건」

-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계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조건성취의 효과」

-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②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불법조건, 기성조건」

-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기한도래의 효과」

-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추인의 요건)

-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와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의 규정은 기한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역에 의한 계산」

-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

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중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중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

다.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점유의 회수」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의 회수)

-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제2항,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판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연손안 경우에 안하여 회복사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의 보유」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간접점유의 보호」

①「점유의 회수」의 청구권은 「간접점유」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구제를 할 수 있다.

사력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 「수도 등 시설권」

①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해 또는 통로로 하지 아

고지나 저지상부에는 수리나 수거를 응수하는 응수층이 있거나  
나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  
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  
용한다.

###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  
다.

②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  
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  
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소통공사권」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  
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여수소통권」

①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  
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  
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  
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  
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  
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  
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수류의 변경」

①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언의 설치, 이용권」

①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공유하천용수권」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물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물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공유하천용수권」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공유하천용수권)

①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 「용수장애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①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지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난사유」

①「**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선의취득**」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 「문화재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무주물의 귀속**」제1항 및 「**유실물의 소유권취득**」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 (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혼화」

「동산간의 부합」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가공」

①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②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 「침부의 효과」

①「부동산에의 부합」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침부로 인한 구상권」

「부동산에의 부합」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공유물의 부담」

①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건물의 구분소유」,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구분소유)

①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합유의 종료」의 규정에 의한다.

### (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합유의 종료」

-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물건의 총유」

-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의 규정에 의한다.

###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준공동소유」

본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소멸청구권」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강행규정」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내지 「지상권소멸청구권」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준용규정」

①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인지사용청구권」 내지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인지사용청구권)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지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①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②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

권의 취득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용수지역권」

①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 「공작물의 공동사용」

①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준용규정」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세권의 내용」

①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②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①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전세권의 소멸청구」

①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

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애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② 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총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①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준용규정」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인지사용청구권」 내지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의 규정은 전세권기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인지사용청구권)

## 〔근접지접촉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유치적효력」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 「전질의 대항요건」

① 「**전질권**」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



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준용규정」

「선의취득」 내지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유치권의 불가분성」 내지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

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동전」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②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③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 ④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는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①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준용규정」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유치권의 불가분성」, 「동산질권의 순위」,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물상대위」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종류채권」

①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 「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②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①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②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징」

①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②선택권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소

는 개별 채무자의 채무가 다른 채무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한 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손해배상의 범위」

-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배상액의 예정」

-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을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채권자취소의 효력」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을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불가분채권」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연대채무의 내용」 내지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부담부분의 균등」 내지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및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경계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계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 「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 「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

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근보증」

-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보증의 방식」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보증의 방식)

-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보증채무의 범위」

-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보증인의 조건」

- ①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 ②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삭제 <2015. 2. 3.>

삭제 <2015. 2. 3.>

###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분할채권관계」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②전항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 「채권의 양도성」

-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승낙, 통지의 효과」

-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양도통지와 금반언」

-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 「승낙여부의 최고」

- ①「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있다.

###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①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변제는 효력이 있다.

###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 「변제기전의 변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 「제삼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하차면 효력이 있다.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변제는 그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권한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경우외에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영수증청구권』

변제자는 변제를 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지정변제충당』

-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법정변제충당』

-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지정변제충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정변제충당)

-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중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내지 「**양도통지와 금반언**」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변제자의 임의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일부의 대위」

①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권자는 대위자에게 그 변제한 가액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①채권전부의 대위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그 채권에 관한 증서 및 점유한 담보물을 대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권증서에 그 대위를 기입하고 자기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대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내지 「**양도통지와 금반언**」의 규정을 준용한다.

「채권자의 담보권, 담보권적 집정대위사리 권력」

「변제자의 법정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변제자의 임의대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내지 「양도통지와 금반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공탁의 방법」

-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공탁물의 회수」

-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상계의 요건」

-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계의 방법, 효과」

-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준용규정」

「지정변제충당」 내지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의 규정은 상계에 준용한다.

### (지정변제충당)

①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정변제충당」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경계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계로 인하여 소멸한다.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계」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계」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권자변경의 경계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승낙, 통지의 효과」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계에 준용한다.

### (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 「환배서」

- ①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
- ②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 「배서의 방식」

-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배서의 방식」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 (배서의 방식)

-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약식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 「배서의 자격수여력」

- ①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 ②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채무자는 배서의 연속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배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의 진위나 소지인의 진위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이 권리자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변제는 무효로 한다.

### 「변제와 증서교부」

채무자는 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

### 「영수의 기입청구권」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 「준용규정」

「동전-선의취득」 내지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 (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 「지명소지인출급채권」

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이 아닌 특별채권이다.

명세서와 같은 요덕이 있다.

## 「면책증서」

「변제의 장소」,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및 「영수의 기입청구권」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한 증서에 준용한다.

### (변제의 장소)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지체책임이 있다.

### (영수의 기입청구권)

①채무자는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증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일부변제의 경우에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증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락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연착된 승낙의 효력」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락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계약체결상의 과실」

-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

제3항은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계약에 기인 영권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 「해지, 해제권」

-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지체와 해제」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은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의 경우에 준용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매매의 효력」

①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암을 팔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①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전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을 준용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동시이행의 하부권」의 규정은 「권리의 인수가 타인에게 소하 경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쌍무의무관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에게 부담되는 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내지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경우에 준용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있는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금공탁청구권」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환매의 의의」

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 「환매기간」

①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②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③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한다.

###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 「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간을 허여할 수 있다.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교환의 의의」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대주의 담보책임」

①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내지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전항의」 미 「이」 「그전항의」

때에는 그채권 시가도 장권아이어간다. 그러나 「**금전채권**」 및 「**외화채권**」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외화채권)

①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②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 「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대물대차」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환매의 실행**」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준용규정」

「**증여자의 담보책임**」,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의 규정은 사용



대차에 준용한다.

###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차용물의 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엽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 「단기임대차의 갱신」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료전 토지에 대하여는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엽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 「임대차의 등기」

-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전대의 효과」

-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목사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엽,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차임연체와 해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엽,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차임연체와 해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동전」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담보물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소멸청구권」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엽,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엽,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준용한다.

###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삭제 <2016. 1. 6.>

삭제 <2016. 1. 6.>

[2016. 1. 6. 법률 제13710호에 의하여 2013. 1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 「강행규정」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차임증감청구권」,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차임연체와 해지」, 「동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내지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엽,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차임연체와 해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엽,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차임증감청구권」,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내지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및 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J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J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J준용규정J

J차주의 사용, 수익권J제1항, J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J내지 J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J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 J고용의 의의J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J보수액과 그 지급시기J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J권리의무의 전속성J

①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③당사자 일방이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 ①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에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목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 ①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보수의 지급시기」

-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의 지급시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같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같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같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기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수급인의 담보책임」, 「동전-도급인의 해제권」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전반씩 부담

그의 여행계약 체결의 목적은 여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

### 「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강행규정」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또는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보수수령권자」

-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광고부지의 행위」

「보수수령권자」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 (보수수령권자)

-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우수현상광고」

-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 ③ 우수한 자 없다는 판정은 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 ⑤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에는 「보수수령권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수수령권자)

- 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현상광고의 철회」

- ①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② 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전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때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 철회는 철회한 것을 안 자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 「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복임권의 제한」

-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복대리인의 권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①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복대리인의 권한)

-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그 권한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

고이고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시세없이 그 선별을 모조아녀야 안다.

###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 「수치인의 통지의무」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수치인은 지체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치인은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그 성질 또는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치물의 반환장소」

임치물은 그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물건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 「준용규정」

「복임권의 제한」,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내지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및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임치에 준용한다.

#### (복임권의 제한)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복대리인의 권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의 의의」

-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사무집행의 방법」

-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으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으로써 결정한다.
-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수임인의 선관의무」 내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손익분배의 비율」

-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 「비임의 탈퇴」

「임의탈퇴」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파산
3. 성년후견의 개시
4. 제명

### (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 「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청산인」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의 선임의 해산, 업무집행방법, 결산, 청산인 규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무집행의 방법」제2항 우반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무집행의 방법)

- 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 ②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 ③조합의 통상사무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의 규정을 준용한다.

####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임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청산인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 (청산인의 직무)

-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종신정기금의 계산」

종신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해제와 동시이행」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규정은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의 경우에 준용한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도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①정기금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기금채권자는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지급을 받은 채무액에서 그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 「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무관리의 내용」

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 「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준용규정」

「수임인의 보고의무」 내지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안나.

###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  
○르 그 이익이 모저무은 야스하 아이이 제사자는 저하이 그저세

그것은 이익이 커질수록 오히려 커져서 세무적인 관점에서 이익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 「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의 책임이 있다.

###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 「수익자의 악의인정」

①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번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또는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번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준용규정」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

여 손해배상에 실효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상당한 저분을 명할 수 있다.

[89헌마160 1991. 4. 1. 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배상액의 경감청구

①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①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 삭제

삭제 <1990. 1. 13.>

### 삭제

삭제 <1990. 1. 13.>

###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1. 8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삭제**

삭제 <2005. 3. 31.>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1. 8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약혼 나이」**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를 필요한 혼인**」를 준용한다.

**(동의를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를 필요한 혼인**」를 준용한다.

「**동의를 필요한 혼인**」

이 경우 「중의가 필요한 혼인」을 순풍안나.

**(농의가 필요한 혼인)**

-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동의를 필요한 혼인」**

-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근친혼 등의 금지」**

-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삭제 <2005. 3. 31.>

### 「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혼인적령」 내지 「중혼의 금지」 및 「혼인의 성립」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근친혼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혼인적령」 내지 「근친혼 등의 금지」(「혼인의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에서 같다) 또는 「중혼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근친혼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혼인이 취소된 후 그 당사자에게 혼인 자유를 제한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혼인적령」, 「동의를 필요한 혼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근친혼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근친혼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혼인이 「혼인적령」, 「동의를 필요한 혼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근친혼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동의를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동의를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동의를 필요한 혼인」을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동의를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근친혼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혼인취소의 사유」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혼인적령」 내지 「근친혼 등의 금지」(「혼인의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에서 같다) 또는 「중혼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의 규정은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면접교섭권)

-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삭제 <2005. 3. 31.>

④ 삭제 <2005. 3. 31.>

###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삭제 <2012. 2. 10.>

삭제 <2012. 2. 10.>

###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 「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동이가 필요한 혼인**」제2항을 준용한다.

### (동이가 필요한 혼인)

-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따른 자의 양육과 「**친권자**」제4항에 따른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친권자**」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참작하여

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면접교섭권」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준용규정」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의 규정은 협의상 이혼에 준용한다.

###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채권자취소권」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재판상 이혼원인」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재판상 이혼원인」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면접교섭권**」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준용한다.

###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면접교섭권)

-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 (재산분할청구권)

-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채권자취소권」**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소는 **「채권자취소권」**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친생부인의 소**

-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는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무의 자 출생 전 사망 능력 진생무인」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소**」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친생부인권의 소멸**」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친생부인권의 소멸)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은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 「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는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다.

### 「사망자의 인지」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 「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 「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인지의 취소」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면접교섭권)

-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

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자의 친생부인」,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①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는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소」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 『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입양의 의사표시』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입양의 의사표시』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입양의 의사표시』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입양의

의사표시』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

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삭제 <2012. 2. 10.>

삭제 <2012. 2. 10.>

###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준용한다.

###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 「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 「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 「입양 신고의 심사」

「입양을 할 능력」,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입양의 의사표시」,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부부의 공동 입양 등」, 「입양의 금지」,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입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 (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가음하여 이양을 스나한다



결함이 없음을 증명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입양의 의사표시」**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입양의 의사표시」**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준용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 (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외국에서 입양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혼인신고」**를 준용한다.

####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입양의 효력』

-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 『입양 무효의 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피성년후견인의 입양』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입양의 의사표시』제2항, 『입양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준용한다.
-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입양의 의사표시)

-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 『입양 취소의 원인』

-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입양을 할 능력』, 『입양의 의사표시』제1항, 『입양의 의사표시』제3항제2호,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제1항, 『부부의 공동 입양 등』을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 (입양의 의사표시)

-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입양의 의사표시」**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입양의 의사표시」**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준용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부부의 공동 입양 등)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 「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입양을 할 능력」**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 「입양 취소 청구권자」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의사표시」**제1항, **「입양의 의사표시」**제3항제2호,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동의권자는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입양의 의사표시)

만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종의권사는 「성년사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입양의 의사표시」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입양의 의사표시」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입양 취소 청구권자」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준용한다.
-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입양 취소 청구권자」

배우자는 「부부의 공동 입양 등」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부부의 공동 입양 등)

-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입양을 할 능력」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성구야시 뜻이나.

**(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을 할 수 있다.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입양의 의사 표시」**제1항, **「입양의 의사표시」**제3항제2호,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입양의 의사표시)**

-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모가 **「입양의 의사표시」**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입양의 의사표시」**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삭제 <2012. 2. 10.>**

삭제 <2012. 2. 10.>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준용한다.
-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입양의 의사표시」제1항, 「입양의 의사표시」제3항제2호,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제1항, 「부부의 공동 입양 등」를 위반한 입양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입양의 의사표시)

-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입양의 의사표시**」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입양의 의사표시**」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 ①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 ②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준용한다.
-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에 따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 (부부의 공동 입양 등)

-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
-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입양 취소의 원인」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입양 취소의 원인)**

- ① 입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입양을 할 능력」, 「입양의 의사표시」제1항, 「입양의 의사표시」제3항제2호,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제1항, 「부부의 공동 입양 등」을 위반한 경우
  2.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에게 약질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② 입양 취소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혼인취소의 효력」를 준용한다.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2. 2. 10.>**

삭제 <2012. 2. 10.>

**삭제 <2012. 2. 10.>**

삭제 <2012. 2. 10.>

**삭제 <2012. 2. 10.>**

삭제 <2012. 2. 10.>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파양 신고의 심사」**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

### 「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입양의 성립」를 준용한다.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의 의사표시」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의 의사표시」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의 범위」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재판상 파양의 원인」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 「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를 준용한다.

##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친양자 입양의 효력」

-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판상 파양의 원인)

-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①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친양자의 파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

킬 수 없게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규정」**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제3항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 또는 **「친양자의 파양」**제1항제2호에 따른 파양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①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②제898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①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

**「준용규정」**

친양자에 관하여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이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친권자」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이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삭제 <2021. 1. 26.>

###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대항요건」의 규정은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 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 「재산관리의 계산」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는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①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에 따른 친권 상실의 선고는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에 따른 친권의 일부 제한,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른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신고할 수 있다.

### 「부모의 권리와 의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신고」와 「친권의 일부 제한의 신고」,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에 따라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신고)

-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신고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친권의 일부 제한의 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신고할 수 있다.

###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실권 회복의 신고」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신고」, 「친권의 일부 제한의 신고」 또는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에 따른 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의 회복을 신고할 수 있다.

###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신고)

-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신고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친권의 일부 제한의 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신고할 수 있다.

##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신고할 수 있다.

###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친권자**」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 양부모(친양자의 양부모를 제외한다) 쌍방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의 지정 등**」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의3·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새로 정하여진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1.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신고**」에 따른 친권상실의 신고가 있는 경우

1의2.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신고**」에 따른 친권 일시 정지의 신고가 있는 경우

1의3. 「**친권의 일부 제한의 신고**」에 따른 친권 일부 제한의 신고가 있는 경우

2.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에 따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가 있는 경우

3.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제1항에 따라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4.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친권자의 지정 등)

① 「**친권자**」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소재를 모르거나 그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 청구나 제3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 인경주도 결국 모든 권력을 인견사도 시경아이가 진다.

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인의 권한」 및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을 준용한다.

1.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2.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3.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⑥ 가정법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친권의 일부 제한의 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신고할 수 있다.

####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신고할 수 있다.

####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신고」, 「친권의 일부 제한의 신고」,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 또는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후견인의 수와 자격」

-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
-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①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후견인의 대리권 등」**

-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에 따라 지정된 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가족의 범위」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 (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수임인의 선관의무」,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후견인의 수와 자격」제2항·제3항, 「성년후견인의 선임」제3항·제4항, 「후견인의 결격사유」,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의 변경」,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후견인에 대한 보수」 및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을 준용한다.

###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 (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 이 이해관계의 유무/범위가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고려하여야 한다.

키 이해관계의 유무(갑인이 영권주권인이 될 때에는 사립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착각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건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 「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

-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목록작성전의 권한」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의 규정은 후견인의 취임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준용한다.

###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미성년후견인은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및 「거소지정권」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 2. 삭제 <2021. 1. 26.>
- 3.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친권의 일부 제한의 신고」,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 또는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제1항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 (친권의 일부 제한의 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신고할 수 있다.

###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신고할 수 있다.

##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친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 ▶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 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①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갈음하여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친권행사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할 수 있다.

## ▶ 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 후견감독인의 동이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후견감독인의 동이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및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의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준용한다.

####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 후견감독인의 동이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후견감독인의 동이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취소할 수 있는 기한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진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진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수임인의 선관 의무」 및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의 규정은 후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

#### (수임인의 선관 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입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④ 「관리인의 직무」 제1항, 제2항, 제4항, 「관리인의 권한」 전단 및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 ②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위임규정의 준용」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대항요건」의 규정은 후견의 종료에 이를 준용한다.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 ① 「한정후견의 개시」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 (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후견인의 대리권 등」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후견인의 대리권 등)

-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한정후견감독인」

-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한정후견인, 친족, 한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 한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수임인의 선관의무」,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후견인의 선임 결정」, 「개시

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내량요건』, 『후견인의 수와 자격』제2항·제3항, 『성년후견인의 선임』제3항·제4항, 『후견인의 결격사유』,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의 변경』,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제2항,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후견감독인의 직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후견인에 대한 보수』 및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후견감독인의 직무』제3항 중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하는 데 동의한다”로 본다.

#### (수임인의 선관외부)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후견인의 수와 자격)

-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
-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 (성년후견인의 선임)

- ①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가족의 범위」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 (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할 수 있다.

###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 「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수임인의 선관의무」,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단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이해상반행위」,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후견인에 대한 보수」 및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을 준용한다.

###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 ②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할 수 있다.

### (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 상반행위」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및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의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응답을 촉구할 권리」를 준용한다.

####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및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을 준용한다.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

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특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수임인의 선관의무」,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후견인의 수와 자격」제2항·제3항, 「성년후견인의 선임」제3항·제4항, 「후견인의 결격사유」,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의 변경」,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후견감독인의 직무」,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후견인에 대한 보수」 및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을 준용한다.

####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 (성년후견인의 선임)

- ①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가족의 범위」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 (후견감독인의 직무)

-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



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 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수임인의 선관의무」,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단서,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후견인에 대한 보수」 및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를 준용한다.

####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 ①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③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에 어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법률행위의 대리 등 필요한 권한행사에 협력하지 아니 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성년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감독인, 「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인에게 재

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특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및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을 준용한다.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가족의 범위」에 따른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

####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①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후견감독인의 직무」제2항·제3항,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및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를 준용한다.

#### (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수임인의 선관의무」,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후견인의 수와 자격」제2항·제3항, 「성년후견인의 선임」제3항·제4항, 「후견인의 결격사유」, 「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의 변경」,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결정 등」제3항부터 제5항까지,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후견인에 대한 보수」 및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를 준용한다.

####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① 임의후견인이 「후견인의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 (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 「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지 공증인의 인승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 삭제 <2011. 3. 7.>

삭제 <2011. 3. 7.>

###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을 후 이에 관한 사정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2005. 3. 31.>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습상속」**

「상속의 순위」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삭제 <1990. 1. 13.>

삭제 <1990. 1. 13.>

###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의 순위**」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 및 「**대습상속분**」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

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1990. 1. 13.>

### (대습상속분)

①「대습상속」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배우자의 상속순위」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1990. 1. 13.>

### 「대습상속분」

①「대습상속」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 (대습상속)

「상속의 순위」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공동상속분의 양수」

①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협의에 의한 분할」

①「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분할후의 피인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



더나 세심사의 권리를 애아서 웃안나.

##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

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관리인의 직무**」 내지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법정단순승인」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신고의 공고」제2항, 제3항과 「채권신고의 최고」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채권신고의 공고」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신고의 공고」제2항, 제3항과 「채권신고의 최고」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신고의 공고」제2항, 제3항과 「채권신고의 최고」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변제」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승인, 포기의 기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 「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배당변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 (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승인, 포기의 기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 「상속재산의 경매」

「배당변제」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 (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승인, 포기의 기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내지 「수증자에의 변제」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승인, 포기의 기간」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채권신고의 공고** 제2항, 제3항과 「채권신고의 최고」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항의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배당변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은 상속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신고의 공고」제2항, 제3항과 「채권신고의 최고」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상속재산의 관리」,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내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의 규정은 전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신고의 공고」제2항, 제3항과 「채권신고의 최고」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두더 3개월 내에 인정증권을 낼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상속재산의 관리」와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관리인의 직무」 내지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관리인의 직무」 내지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수임인의 보고의무」 내지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및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 (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및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①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 ①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②「채권신고의 공고」제2항, 제3항과 「채권신고의 최고」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및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내지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제1항의 공고있는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의 직무**」 내지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상속인수색의 공고」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제1항의 공고있는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채권신고의 공고**」제2항, 제3항, 「**채권신고의 최고**」,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내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상속인수색의 공고**」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 (상속인수색의 공고)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

손주를 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원디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상속인수색의 공고**」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상속인수색의 공고**」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 「유언적령」

### 「제한능력자의 유언」

유언에 관하여는 「**미성년자의 능력**」,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및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기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상속의 순위」제3항, 「상속인의 결격사유」의 규정은 수증자에 준용한다.

####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 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

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 「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 「유증의 승인, 포기」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

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과실의 가액의 한도에서 과실을 취득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 「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①채권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유언자가 그 변제를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 중에 있는 때에는 그 물건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변제받은 채권액에 상당한 금전이 상속재산중에 없는 때에도 그 금액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유증의 물상대위성」의 경우에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유증의 물상대위성)

유증자가 유증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점유의 침해로 인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

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①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②유증의 목적의 가액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수증자는 그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할 의무를 면한다.

###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정지조건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언증서의 개봉」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유언집행자의 지정」의 위탁을 받은 제삼자는 그 위탁있음을 안후 지체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유언집행자의 지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①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①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에게 위탁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재산목록작성」

①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 「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 「유언집행자의 지위」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수임인의 선관의무」 내지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와 「위임종료의 대항요건」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유언집행자의 보수」

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 「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 「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 「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 「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

(유류분의 산정)



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산입될 증여」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준용규정」

「대습상속」,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대습상속)

「상속의 순위」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대습상속분)

①「대습상속」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 상속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배우자의 상속순위」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2절 주소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2절 설립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3절 기관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4절 해산	
제1편 총칙	제3장 법인	제5절 벌칙	

제1편 총칙	제4장 물건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2절 의사표시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3절 대리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편 총칙	제5장 법률행위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편 총칙	제6장 기간		
제1편 총칙	제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2편 물권	제2장 점유권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2편 물권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소유	
제2편 물권	제4장 지상권		
제2편 물권	제5장 지역권		
제2편 물권	제6장 전세권		
제2편 물권	제7장 유치권		
제2편 물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편 물권	제8장 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2편 물권	제9장 저당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3관 연대채무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관 보증채무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4절 채권의 양도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5절 채무의 인수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6절 채권의 소멸	제2관 공탁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6절 채권의 소멸	제3관 상계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6절 채권의 소멸	제4관 경계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6절 채권의 소멸	제5관 면제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6절 채권의 소멸	제6관 혼동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7절 지시채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8절 무기명채권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관 계약의 효력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2절 증여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2관 매매의 효력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3절 매매	제3관 환매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4절 교환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5절 소비대차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6절 사용대차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7절 임대차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8절 고용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9절 도급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1절 위임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2절 임치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3절 조합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4절 종신통기금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5절 화해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9절의2 여행계약	
제3편 채권	제3장 사무관리		
제3편 채권	제4장 부당이득		
제3편 채권	제5장 불법행위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4편 친족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2절 혼인의 성립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4절 혼인의 효력	제2관 재산상 효력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제5절 이혼	제2관 재판상 이혼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養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養子)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養子)	제3관 파양(罷養)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養子)	제3관 파양(罷養)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2절 양자(養子)	제4관 친양자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3절 친권	제2관 친권의 효력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3절 친권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1관 후견인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2관 후견감독인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4관 후견의 종료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4편 친족	제5장 후견	제3절 후견계약	
제4편 친족	제6장 삭제 <2011. 3. 7.>		
제4편 친족	제7장 부양		
제4편 친족	제8장 삭제 <2005. 3. 31.>	제1절 삭제 <2005. 3. 31.>	
제4편 친족	제8장 삭제 <2005. 3. 31.>	제2절 삭제 <2005. 3. 31.>	
제4편 친족	제8장 삭제 <2005. 3. 31.>	제3절 삭제 <2005. 3. 31.>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2절 상속인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3절 상속의 효력	제2관 상속분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3절 상속의 효력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2관 단순승인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3관 한정승인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4관 포기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5절 재산의 분리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제2절 유언의 방식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제3절 유언의 효력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편 상속	제2장 유언	제5절 유언의 철회	
제5편 상속	제3장 유류분		

목차:

- 1 제1조 「법원」
- 2 제2조 「신의성실」
- 3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4 제4조 「성년」
- 5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6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 7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 8 제8조 「영업의 허락」
- 9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10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11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 12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13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14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15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 16 제14조의3 J심판 사이의 관계J
- 17 제15조 J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J
- 18 제16조 J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J
- 19 제17조 J제한능력자의 속임수J
- 20 제18조 J주소J
- 21 제19조 J거소J
- 22 제20조 J거소J
- 23 제21조 J가주소J
- 24 제22조 J부채자의 재산의 관리J
- 25 제23조 J관리인의 개임J
- 26 제24조 J관리인의 직무J
- 27 제25조 J관리인의 권한J
- 28 제26조 J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J
- 29 제27조 J실종의 선고J
- 30 제28조 J실종선고의 효과J
- 31 제29조 J실종선고의 취소J
- 32 제30조 J동시사망J
- 33 제31조 J법인성립의 준칙J
- 34 제32조 J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J
- 35 제33조 J법인설립의 등기J
- 36 제34조 J법인의 권리능력J
- 37 제35조 J법인의 불법행위능력J
- 38 제36조 J법인의 주소J
- 39 제37조 J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J
- 40 제38조 J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J
- 41 제39조 J영리법인J
- 42 제40조 J사단법인의 정관J
- 43 제41조 J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J
- 44 제42조 J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J
- 45 제43조 J재단법인의 정관J
- 46 제44조 J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J
- 47 제45조 J재단법인의 정관변경J
- 48 제46조 J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J
- 49 제47조 J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J
- 50 제48조 J출연재산의 귀속시기J
- 51 제49조 J법인의 등기사항J
- 52 제50조 J분사무소설치의 등기J
- 53 제51조 J사무소이전의 등기J
- 54 제52조 J변경등기J
- 55 제52조의2 J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J
- 56 제53조 J등기기간의 기산J
- 57 제54조 J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J
- 58 제55조 J재산목록과 사원명부J
- 59 제56조 J사외권이 아닌 사소금지J

59	제50조 「사법연수 제도, 영속금치」
60	제57조 「이사」
61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62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63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64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65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66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67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68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69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70	제66조 「감사」
71	제67조 「감사의 직무」
72	제68조 「총회의 권한」
73	제69조 「통상총회」
74	제70조 「임시총회」
75	제71조 「총회의 소집」
76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77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78	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79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80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81	제77조 「해산사유」
82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83	제79조 「파산신청」
84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85	제81조 「청산법인」
86	제82조 「청산인」
87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88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89	제85조 「해산등기」
90	제86조 「해산신고」
91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92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93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94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95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96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97	제93조 「청산중의 파산」
98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99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100	제96조 「준용규정」
101	제97조 「벌칙」
102	제98조 「물건의 정의」

- 103 제99조 J부동산, 동산J
- 104 제100조 J주물, 증물J
- 105 제101조 J천연과실, 법정과실J
- 106 제102조 J과실의 취득J
- 107 제103조 J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J
- 108 제104조 J불공정한 법률행위J
- 109 제105조 J임의규정J
- 110 제106조 J사실인 관습J
- 111 제107조 J진의 아닌 의사표시J
- 112 제108조 J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J
- 113 제109조 J착오로 인한 의사표시J
- 114 제110조 J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J
- 115 제111조 J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J
- 116 제112조 J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J
- 117 제113조 J의사표시의 공시송달J
- 118 제114조 J대리행위의 효력J
- 119 제115조 J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J
- 120 제116조 J대리행위의 하자J
- 121 제117조 J대리인의 행위능력J
- 122 제118조 J대리권의 범위J
- 123 제119조 J각자대리J
- 124 제120조 J임의대리인의 복임권J
- 125 제121조 J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J
- 126 제122조 J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J
- 127 제123조 J복대리인의 권한J
- 128 제124조 J자기계약, 쌍방대리J
- 129 제125조 J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J
- 130 제126조 J권한을 넘은 표현대리J
- 131 제127조 J대리권의 소멸사유J
- 132 제128조 J임의대리의 종료J
- 133 제129조 J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J
- 134 제130조 J무권대리J
- 135 제131조 J상대방의 최고권J
- 136 제132조 J추인, 거절의 상대방J
- 137 제133조 J추인의 효력J
- 138 제134조 J상대방의 철회권J
- 139 제135조 J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J
- 140 제136조 J단독행위와 무권대리J
- 141 제137조 J법률행위의 일부무효J
- 142 제138조 J무효행위의 전환J
- 143 제139조 J무효행위의 추인J
- 144 제140조 J법률행위의 취소권자J
- 145 제141조 J취소의 효과J
- 146 제142조 J취소의 상대방J

- 147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 148 제144조 「추인의 요건」
- 149 제145조 「법정추인」
- 150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 151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 152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153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154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155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 156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 157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158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 159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 160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 161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 162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 163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 164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 165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166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167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168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 169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170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171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 172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173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 174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175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176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177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178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179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180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 181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 182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 183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 184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185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 186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 187 제183조 「중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188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189 제185조 「물권의 종류」



- 190 제186조 ㄱ무농산물권변농의 효력
- 191 제187조 ㄱ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192 제188조 ㄱ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193 제189조 ㄱ점유개정
- 194 제190조 ㄱ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195 제191조 ㄱ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196 제192조 ㄱ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197 제193조 ㄱ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 198 제194조 ㄱ간접점유
- 199 제195조 ㄱ점유보조자
- 200 제196조 ㄱ점유권의 양도
- 201 제197조 ㄱ점유의 태양
- 202 제198조 ㄱ점유계속의 추정
- 203 제199조 ㄱ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204 제200조 ㄱ권리의 적법의 추정
- 205 제201조 ㄱ점유자와 과실
- 206 제202조 ㄱ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207 제203조 ㄱ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208 제204조 ㄱ점유의 회수
- 209 제205조 ㄱ점유의 보유
- 210 제206조 ㄱ점유의 보전
- 211 제207조 ㄱ간접점유의 보호
- 212 제208조 ㄱ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213 제209조 ㄱ자력구제
- 214 제210조 ㄱ준점유
- 215 제211조 ㄱ소유권의 내용
- 216 제212조 ㄱ토지소유권의 범위
- 217 제213조 ㄱ소유물반환청구권
- 218 제214조 ㄱ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219 제215조 ㄱ건물의 구분소유
- 220 제216조 ㄱ인지사용청구권
- 221 제217조 ㄱ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222 제218조 ㄱ수도 등 시설권
- 223 제219조 ㄱ주위토지통행권
- 224 제220조 ㄱ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225 제221조 ㄱ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226 제222조 ㄱ소통공사권
- 227 제223조 ㄱ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228 제224조 ㄱ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 229 제225조 ㄱ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 230 제226조 ㄱ여수소통권
- 231 제227조 ㄱ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232 제228조 ㄱ여수급여청구권
- 233 제229조 ㄱ수류의 변경

- 234 제230조 J언의 설치, 이용권J
- 235 제231조 J공유하천용수권J
- 236 제232조 J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J
- 237 제233조 J용수권의 승계J
- 238 제234조 J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J
- 239 제235조 J공용수의 용수권J
- 240 제236조 J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J
- 241 제237조 J경계표, 담의 설치권J
- 242 제238조 J담의 특수시설권J
- 243 제239조 J경계표 등의 공유추정J
- 244 제240조 J수지, 목근의 제거권J
- 245 제241조 J토지의 심굴금지J
- 246 제242조 J경계선부근의 건축J
- 247 제243조 J차면시설의무J
- 248 제244조 J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J
- 249 제245조 J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J
- 250 제246조 J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J
- 251 제247조 J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J
- 252 제248조 J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J
- 253 제249조 J선의취득J
- 254 제250조 J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J
- 255 제251조 J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J
- 256 제252조 J무주물의 귀속J
- 257 제253조 J유실물의 소유권취득J
- 258 제254조 J매장물의 소유권취득J
- 259 제255조 J문화재의 국유J
- 260 제256조 J부동산에의 부합J
- 261 제257조 J동산간의 부합J
- 262 제258조 J혼화J
- 263 제259조 J가공J
- 264 제260조 J첨부의 효과J
- 265 제261조 J첨부로 인한 구상권J
- 266 제262조 J물건의 공유J
- 267 제263조 J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J
- 268 제264조 J공유물의 처분, 변경J
- 269 제265조 J공유물의 관리, 보존J
- 270 제266조 J공유물의 부담J
- 271 제267조 J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J
- 272 제268조 J공유물의 분할청구J
- 273 제269조 J분할의 방법J
- 274 제270조 J분할로 인한 담보책임J
- 275 제271조 J물건의 합유J
- 276 제272조 J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J

277 제273조 ㄱ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278 제274조 ㄱ합유의 종료  
279 제275조 ㄱ물건의 총유  
280 제276조 ㄱ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281 제277조 ㄱ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282 제278조 ㄱ준공동소유  
283 제279조 ㄱ지상권의 내용  
284 제280조 ㄱ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285 제281조 ㄱ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286 제282조 ㄱ지상권의 양도, 임대  
287 제283조 ㄱ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288 제284조 ㄱ갱신과 존속기간  
289 제285조 ㄱ수거의무, 매수청구권  
290 제286조 ㄱ지료증감청구권  
291 제287조 ㄱ지상권소멸청구권  
292 제288조 ㄱ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293 제289조 ㄱ강행규정  
294 제289조의2 ㄱ구분지상권  
295 제290조 ㄱ준용규정  
296 제291조 ㄱ지역권의 내용  
297 제292조 ㄱ부종성  
298 제293조 ㄱ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299 제294조 ㄱ지역권취득기간  
300 제295조 ㄱ취득과 불가분성  
301 제296조 ㄱ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302 제297조 ㄱ용수지역권  
303 제298조 ㄱ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304 제299조 ㄱ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305 제300조 ㄱ공작물의 공동사용  
306 제301조 ㄱ준용규정  
307 제302조 ㄱ특수지역권  
308 제303조 ㄱ전세권의 내용  
309 제304조 ㄱ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310 제305조 ㄱ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311 제306조 ㄱ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312 제307조 ㄱ전세권양도의 효력  
313 제308조 ㄱ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314 제309조 ㄱ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315 제310조 ㄱ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316 제311조 ㄱ전세권의 소멸청구  
317 제312조 ㄱ전세권의 존속기간  
318 제312조의2 ㄱ전세금 증감청구권  
319 제313조 ㄱ전세권의 소멸통고  
320 제314조 ㄱ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321 제315조 ㄱ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322 제316조 ㄱ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 323 제317조 ㄱ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324 제318조 ㄱ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 325 제319조 ㄱ 준용규정
- 326 제320조 ㄱ 유치권의 내용
- 327 제321조 ㄱ 유치권의 불가분성
- 328 제322조 ㄱ 경매, 간이변제충당
- 329 제323조 ㄱ 과실수취권
- 330 제324조 ㄱ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331 제325조 ㄱ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332 제326조 ㄱ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333 제327조 ㄱ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334 제328조 ㄱ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335 제329조 ㄱ 동산질권의 내용
- 336 제330조 ㄱ 설정계약의 요물성
- 337 제331조 ㄱ 질권의 목적물
- 338 제332조 ㄱ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 339 제333조 ㄱ 동산질권의 순위
- 340 제334조 ㄱ 피담보채권의 범위
- 341 제335조 ㄱ 유치적효력
- 342 제336조 ㄱ 전질권
- 343 제337조 ㄱ 전질의 대항요건
- 344 제338조 ㄱ 경매, 간이변제충당
- 345 제339조 ㄱ 유질계약의 금지
- 346 제340조 ㄱ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347 제341조 ㄱ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348 제342조 ㄱ 물상대위
- 349 제343조 ㄱ 준용규정
- 350 제344조 ㄱ 타법률에 의한 질권
- 351 제345조 ㄱ 권리질권의 목적
- 352 제346조 ㄱ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353 제347조 ㄱ 설정계약의 요물성
- 354 제348조 ㄱ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 355 제349조 ㄱ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356 제350조 ㄱ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357 제351조 ㄱ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 358 제352조 ㄱ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 359 제353조 ㄱ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360 제354조 ㄱ 동전
- 361 제355조 ㄱ 준용규정
- 362 제356조 ㄱ 저당권의 내용
- 363 제357조 ㄱ 근저당

- 364 제358조 J저당권의 효력의 범위J
- 365 제359조 J과실에 대한 효력J
- 366 제360조 J피담보채권의 범위J
  
- 367 제361조 J저당권의 처분제한J
- 368 제362조 J저당물의 보충J
- 369 제363조 J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J
- 370 제364조 J제삼취득자의 변제J
- 371 제365조 J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J
- 372 제366조 J법정지상권J
- 373 제367조 J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J
- 374 제368조 J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J
- 375 제369조 J부종성J
- 376 제370조 J준용규정J
- 377 제371조 J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J
- 378 제372조 J타법률에 의한 저당권J
- 379 제373조 J채권의 목적J
- 380 제374조 J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J
- 381 제375조 J종류채권J
- 382 제376조 J금전채권J
- 383 제377조 J외화채권J
- 384 제378조 J동전J
- 385 제379조 J법정이율J
- 386 제380조 J선택채권J
- 387 제381조 J선택권의 이전J
- 388 제382조 J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J
- 389 제383조 J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J
- 390 제384조 J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J
- 391 제385조 J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J
- 392 제386조 J선택의 소급효J
- 393 제387조 J이행기와 이행지체J
- 394 제388조 J기한의 이익의 상실J
- 395 제389조 J강제이행J
- 396 제390조 J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J
- 397 제391조 J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J
- 398 제392조 J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J
- 399 제393조 J손해배상의 범위J
- 400 제394조 J손해배상의 방법J
- 401 제395조 J이행지체와 전보배상J
- 402 제396조 J과실상계J
- 403 제397조 J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J
- 404 제398조 J배상액의 예정J
- 405 제399조 J손해배상자의 대위J
- 406 제400조 J채권자지체J
- 407 제401조 J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J

- 408 제402조 J동전J
- 409 제403조 J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J
- 410 제404조 J채권자대위권J
- 411 제405조 J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J
- 412 제406조 J채권자취소권J
- 413 제407조 J채권자취소의 효력J
- 414 제408조 J분할채권관계J
- 415 제409조 J불가분채권J
- 416 제410조 J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J
- 417 제411조 J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J
- 418 제412조 J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J
- 419 제413조 J연대채무의 내용J
- 420 제414조 J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J
- 421 제415조 J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J
- 422 제416조 J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J
- 423 제417조 J경개의 절대적 효력J
- 424 제418조 J상계의 절대적 효력J
- 425 제419조 J면제의 절대적 효력J
- 426 제420조 J혼동의 절대적 효력J
- 427 제421조 J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J
- 428 제422조 J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J
- 429 제423조 J효력의 상대성의 원칙J
- 430 제424조 J부담부분의 균등J
- 431 제425조 J출재채무자의 구상권J
- 432 제426조 J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J
- 433 제427조 J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J
- 434 제428조 J보증채무의 내용J
- 435 제428조의2 J보증의 방식J
- 436 제428조의3 J근보증J
- 437 제429조 J보증채무의 범위J
- 438 제430조 J목적, 형태상의 부종성J
- 439 제431조 J보증인의 조건J
- 440 제432조 J타담보의 제공J
- 441 제433조 J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J
- 442 제434조 J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J
- 443 제435조 J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J
- 444 제436조 삭제 <2015. 2. 3.>
- 445 제436조의2 J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J
- 446 제437조 J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J
- 447 제438조 J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J
- 448 제439조 J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J
- 449 제440조 J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J

- 450 제441조 J수탁보증인의 구상권J
- 451 제442조 J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J
- 452 제443조 J주채무자의 면책청구J
  
- 453 제444조 J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J
- 454 제445조 J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J
- 455 제446조 J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J
- 456 제447조 J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J
- 457 제448조 J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J
- 458 제449조 J채권의 양도성J
- 459 제450조 J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J
- 460 제451조 J승낙, 통지의 효과J
- 461 제452조 J양도통지와 금반언J
- 462 제453조 J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J
- 463 제454조 J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J
- 464 제455조 J승낙여부의 최고J
- 465 제456조 J채무인수의 철회, 변경J
- 466 제457조 J채무인수의 소급효J
- 467 제458조 J전채무자의 항변사유J
  
- 468 제459조 J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J
- 469 제460조 J변제제공의 방법J
- 470 제461조 J변제제공의 효과J
- 471 제462조 J특정물의 현상인도J
- 472 제463조 J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J
- 473 제464조 J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J
- 474 제465조 J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J
  
- 475 제466조 J대물변제J
- 476 제467조 J변제의 장소J
- 477 제468조 J변제기전의 변제J
- 478 제469조 J제삼자의 변제J
- 479 제470조 J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J
- 480 제471조 J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J
- 481 제472조 J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J
- 482 제473조 J변제비용의 부담J
- 483 제474조 J영수증청구권J
- 484 제475조 J채권증서반환청구권J
- 485 제476조 J지정변제충당J
- 486 제477조 J법정변제충당J
- 487 제478조 J부족변제의 충당J
- 488 제479조 J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J
- 489 제480조 J변제자의 임의대위J
- 490 제481조 J변제자의 법정대위J
- 491 제482조 J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J
- 492 제483조 J일부의 대위J

- 493 제484조 ㄱ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 494 제485조 ㄱ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 495 제486조 ㄱ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 496 제487조 ㄱ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497 제488조 ㄱ공탁의 방법
- 498 제489조 ㄱ공탁물의 회수
- 499 제490조 ㄱ자조매각금의 공탁
- 500 제491조 ㄱ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 501 제492조 ㄱ상계의 요건
- 502 제493조 ㄱ상계의 방법, 효과
- 503 제494조 ㄱ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 504 제495조 ㄱ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505 제496조 ㄱ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506 제497조 ㄱ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507 제498조 ㄱ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 508 제499조 ㄱ준용규정
- 509 제500조 ㄱ경개의 요건, 효과
- 510 제501조 ㄱ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511 제502조 ㄱ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 512 제503조 ㄱ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 513 제504조 ㄱ구채무불소멸의 경우
- 514 제505조 ㄱ신채무에의 담보이전
- 515 제506조 ㄱ면제의 요건, 효과
- 516 제507조 ㄱ혼동의 요건, 효과
- 517 제508조 ㄱ지시채권의 양도방식
- 518 제509조 ㄱ환배서
- 519 제510조 ㄱ배서의 방식
- 520 제511조 ㄱ약식배서의 처리방식
- 521 제512조 ㄱ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 522 제513조 ㄱ배서의 자격수여력
- 523 제514조 ㄱ동전-선의취득
- 524 제515조 ㄱ이전배서와 인적항변
- 525 제516조 ㄱ변제의 장소
- 526 제517조 ㄱ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 527 제518조 ㄱ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 528 제519조 ㄱ변제와 증서교부
- 529 제520조 ㄱ영수의 기입청구권
- 530 제521조 ㄱ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 531 제522조 ㄱ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 532 제523조 ㄱ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 533 제524조 ㄱ준용규정
- 534 제525조 ㄱ지명소지인출급채권
- 535 제526조 ㄱ면책증서
- 536 제527조 ㄱ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537 제528조 J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J  
538 제529조 J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J  
539 제530조 J연착된 승낙의 효력J  
540 제531조 J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J  
541 제532조 J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J  
542 제533조 J교차청약J  
543 제534조 J변경을 가한 승낙J  
544 제535조 J계약체결상의 과실J  
545 제536조 J동시이행의 항변권J  
546 제537조 J채무자위험부담주의J  
547 제538조 J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J  
548 제539조 J제삼자를 위한 계약J  
549 제540조 J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J  
550 제541조 J제삼자의 권리의 확정J  
551 제542조 J채무자의 항변권J  
552 제543조 J해지, 해제권J  
553 제544조 J이행지체와 해제J  
554 제545조 J정기행위와 해제J  
555 제546조 J이행불능과 해제J  
556 제547조 J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J  
557 제548조 J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J  
558 제549조 J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J  
559 제550조 J해지의 효과J  
560 제551조 J해지, 해제와 손해배상J  
561 제552조 J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J  
562 제553조 J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J  
563 제554조 J증여의 의의J  
564 제555조 J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J  
565 제556조 J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J  
566 제557조 J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J  
567 제558조 J해제와 이행완료부분J  
568 제559조 J증여자의 담보책임J  
569 제560조 J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J  
570 제561조 J부담부증여J  
571 제562조 J사인증여J  
572 제563조 J매매의 의의J  
573 제564조 J매매의 일방예약J  
574 제565조 J해약금J  
575 제566조 J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J  
576 제567조 J유상계약에의 준용J  
577 제568조 J매매의 효력J  
578 제569조 J타인의 권리의 매매J  
579 제570조 J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J  
580 제571조 J동전-서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J

- 581 제572조 J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J
- 582 제573조 J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J
- 583 제574조 J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J
- 584 제575조 J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J
- 585 제576조 J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J
- 586 제577조 J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J
- 587 제578조 J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J
- 588 제579조 J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J
- 589 제580조 J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J
- 590 제581조 J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J
- 591 제582조 J전2조의 권리행사기간J
- 592 제583조 J담보책임과 동시이행J
- 593 제584조 J담보책임면제의 특약J
- 594 제585조 J동일기한의 추정J
- 595 제586조 J대금지급장소J
- 596 제587조 J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J
- 597 제588조 J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J
- 598 제589조 J대금공탁청구권J
- 599 제590조 J환매의 의의J
- 600 제591조 J환매기간J
- 601 제592조 J환매등기J
- 602 제593조 J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J
- 603 제594조 J환매의 실행J
- 604 제595조 J공유지분의 환매J
- 605 제596조 J교환의 의의J
- 606 제597조 J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J
- 607 제598조 J소비대차의 의의J
- 608 제599조 J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J
- 609 제600조 J이자계산의 시기J
- 610 제601조 J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J
- 611 제602조 J대주의 담보책임J
- 612 제603조 J반환시기J
- 613 제604조 J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J
- 614 제605조 J준소비대차J
- 615 제606조 J대물대차J
- 616 제607조 J대물반환의 예약J
- 617 제608조 J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J
- 618 제609조 J사용대차의 의의J
- 619 제610조 J차주의 사용, 수익권J
- 620 제611조 J비용의 부담J
- 621 제612조 J준용규정J
- 622 제613조 J차용물의 반환시기J
- 623 제614조 J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J

624 제615조 』사주의 권영속리주저 열기권』  
625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626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627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628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629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630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631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632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633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634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635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636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637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638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639 제630조 』전대의 효과』  
640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641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642 제633조 』차임지급의 시기』  
643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644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645 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646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647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648 제639조 』묵시의 갱신』  
649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650 제641조 』동전』  
651 제642조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652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653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654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655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656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657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658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659 제650조 』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660 제651조 삭제 <2016. 1. 6.>  
661 제652조 』강행규정』  
662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663 제654조 』준용규정』  
664 제655조 』고용의 의의』  
665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666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667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668 제659조 』임차인의 권리의 법정청구권』

668 제659소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669 제660조 1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670 제661조 1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671 제662조 1묵시의 갱신  
672 제663조 1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673 제664조 1도급의 의의  
674 제665조 1보수의 지급시기  
675 제666조 1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676 제667조 1수급인의 담보책임  
677 제668조 1동전-도급인의 해제권  
678 제669조 1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679 제670조 1담보책임의 존속기간  
680 제671조 1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681 제672조 1담보책임면제의 특약  
682 제673조 1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683 제674조 1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684 제674조의2 1여행계약의 의의  
685 제674조의3 1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686 제674조의4 1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687 제674조의5 1대금의 지급시기  
688 제674조의6 1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689 제674조의7 1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690 제674조의8 1담보책임의 존속기간  
691 제674조의9 1강행규정  
692 제675조 1현상광고의 의의  
693 제676조 1보수수령권자  
694 제677조 1광고부지의 행위  
695 제678조 1우수현상광고  
696 제679조 1현상광고의 철회  
697 제680조 1위임의 의의  
698 제681조 1수임인의 선관의무  
699 제682조 1복임권의 제한  
700 제683조 1수임인의 보고의무  
701 제684조 1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702 제685조 1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703 제686조 1수임인의 보수청구권  
704 제687조 1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705 제688조 1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706 제689조 1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707 제690조 1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708 제691조 1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709 제692조 1위임종료의 대항요건  
710 제693조 1임치의 의의  
711 제694조 1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712 제695조 J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J  
713 제696조 J수치인의 통지의무J  
714 제697조 J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J  
715 제698조 J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J  
716 제699조 J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J  
717 제700조 J임치물의 반환장소J  
718 제701조 J준용규정J  
  
719 제702조 J소비임치J  
720 제703조 J조합의 의의J  
721 제704조 J조합재산의 합유J  
722 제705조 J금전출자자체의 책임J  
723 제706조 J사무집행의 방법J  
724 제707조 J준용규정J  
725 제708조 J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J  
726 제709조 J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J  
727 제710조 J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J  
728 제711조 J손익분배의 비율J  
729 제712조 J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J  
730 제713조 J무자격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J  
731 제714조 J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J  
732 제715조 J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J  
733 제716조 J임의탈퇴J  
734 제717조 J비임의 탈퇴J  
735 제718조 J제명J  
736 제719조 J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J  
737 제720조 J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J  
738 제721조 J청산인J  
739 제722조 J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J  
740 제723조 J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J  
741 제724조 J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J  
742 제725조 J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J  
743 제726조 J종신정기금의 계산J  
744 제727조 J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J  
745 제728조 J해제와 동시이행J  
746 제729조 J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J  
747 제730조 J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J  
748 제731조 J화해의 의의J  
749 제732조 J화해의 창설적효력J  
750 제733조 J화해의 효력과 착오J  
751 제734조 J사무관리의 내용J  
752 제735조 J긴급사무관리J  
753 제736조 J관리자의 통지의무J  
754 제737조 J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J

755 제738조 J준용규정J  
756 제739조 J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J  
757 제740조 J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J  
758 제741조 J부당이득의 내용J  
759 제742조 J비채변제J  
760 제743조 J기한전의 변제J  
761 제744조 J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J  
762 제745조 J타인의 채무의 변제J  
763 제746조 J불법원인급여J  
764 제747조 J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J  
765 제748조 J수익자의 반환범위J  
766 제749조 J수익자의 악의인정J  
767 제750조 J불법행위의 내용J  
768 제751조 J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J  
769 제752조 J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J  
770 제753조 J미성년자의 책임능력J  
771 제754조 J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J  
772 제755조 J감독자의 책임J  
773 제756조 J사용자의 배상책임J  
774 제757조 J도급인의 책임J  
775 제758조 J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J  
776 제759조 J동물의 점유자의 책임J  
777 제760조 J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J  
778 제761조 J정당방위, 긴급피난J  
779 제762조 J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J  
780 제763조 J준용규정J  
781 제764조 J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J  
782 제765조 J배상액의 경감청구J  
783 제766조 J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J  
784 제767조 J친족의 정의J  
785 제768조 J혈족의 정의J  
786 제769조 J인척의 계원J  
787 제770조 J혈족의 촌수의 계산J  
788 제771조 J인척의 촌수의 계산J  
789 제772조 J양자와의 친계와 촌수J  
790 제773조 삭제 <1990. 1. 13.>  
791 제774조 삭제 <1990. 1. 13.>  
792 제775조 J인척관계 등의 소멸J  
793 제776조 J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J  
794 제777조 J친족의 범위J  
795 제778조 삭제 <2005. 3. 31.>  
796 제779조 J가족의 범위J  
797 제780조 삭제 <2005. 3. 31.>

798 제781조 J자의 성과 본J  
799 제782조 삭제 <2005. 3. 31.>  
800 제783조 삭제 <2005. 3. 31.>  
801 제784조 삭제 <2005. 3. 31.>  
802 제785조 삭제 <2005. 3. 31.>  
803 제786조 삭제 <2005. 3. 31.>  
804 제787조 삭제 <2005. 3. 31.>  
805 제788조 삭제 <2005. 3. 31.>  
806 제789조 삭제 <2005. 3. 31.>  
807 제790조 삭제 <1990. 1. 13.>  
808 제791조 삭제 <2005. 3. 31.>  
809 제792조 삭제 <1990. 1. 13.>  
810 제793조 삭제 <2005. 3. 31.>  
811 제794조 삭제 <2005. 3. 31.>  
812 제795조 삭제 <2005. 3. 31.>  
813 제796조 삭제 <2005. 3. 31.>  
814 제797조 삭제 <1990. 1. 13.>  
815 제798조 삭제 <1990. 1. 13.>  
816 제799조 삭제 <1990. 1. 13.>  
817 제800조 J약혼의 자유J  
818 제801조 J약혼 나이J  
819 제802조 J성년후견과 약혼J  
820 제803조 J약혼의 강제이행금지J  
821 제804조 J약혼해제의 사유J  
822 제805조 J약혼해제의 방법J  
823 제806조 J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J  
824 제807조 J혼인적령J  
825 제808조 J동의를 필요한 혼인J  
826 제809조 J근친혼 등의 금지J  
827 제810조 J중혼의 금지J  
828 제811조 삭제 <2005. 3. 31.>  
829 제812조 J혼인의 성립J  
830 제813조 J혼인신고의 심사J  
831 제814조 J외국에서의 혼인신고J  
832 제815조 J혼인의 무효J  
833 제816조 J혼인취소의 사유J  
834 제817조 J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J  
835 제818조 J중혼의 취소청구권자J  
836 제819조 J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J  
837 제820조 J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J  
838 제821조 삭제 <2005. 3. 31.>  
839 제822조 J약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J  
840 제823조 J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J  
841 제824조 J혼인취소의 효력J

842 제824조의2 J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J  
843 제825조 J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J  
844 제826조 J부부간의 의무J  
845 제826조의2 J성년의제J  
846 제827조 J부부간의 가사대리권J  
847 제828조 삭제 <2012. 2. 10.>  
848 제829조 J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J  
849 제830조 J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J  
850 제831조 J특유재산의 관리 등J  
851 제832조 J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J  
852 제833조 J생활비용J  
853 제834조 J협의상 이혼J  
854 제835조 J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J  
855 제836조 J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J  
856 제836조의2 J이혼의 절차J  
857 제837조 J이혼과 자의 양육책임J  
858 제837조의2 J면접교섭권J  
859 제838조 J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J  
860 제839조 J준용규정J  
861 제839조의2 J재산분할청구권J  
862 제839조의3 J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J  
863 제840조 J재판상 이혼원인J  
864 제841조 J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J  
865 제842조 J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J  
866 제843조 J준용규정J  
867 제844조 J남편의 친생자의 추정J  
868 제845조 J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J  
869 제846조 J자의 친생부인J  
870 제847조 J친생부인의 소J  
871 제848조 J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J  
872 제849조 J자사망후의 친생부인J  
873 제850조 J유언에 의한 친생부인J  
874 제851조 J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J  
875 제852조 J친생부인권의 소멸J  
876 제853조 삭제 <2005. 3. 31.>  
877 제854조 J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J  
878 제854조의2 J친생부인의 허가 청구J  
879 제855조 J인지J  
880 제855조의2 J인지의 허가 청구J  
881 제856조 J피성년후견인의 인지J  
882 제857조 J사망자의 인지J  
883 제858조 J포태중인 자의 인지J  
884 제859조 J인지의 효력발생J  
885 제860조 J인지의 수급청구



- 886 제861조 J인지의 취소J
- 887 제862조 J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J
- 888 제863조 J인지청구의 소J
- 889 제864조 J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J
- 890 제864조의2 J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J
- 891 제865조 J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인 소J
- 892 제866조 J입양을 할 능력J
- 893 제867조 J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J
- 894 제868조 삭제 <1990. 1. 13.>
- 895 제869조 J입양의 의사표시J
- 896 제870조 J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J
- 897 제871조 J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J
- 898 제872조 삭제 <2012. 2. 10.>
- 899 제873조 J피성년후견인의 입양J
- 900 제874조 J부부의 공동 입양 등J
- 901 제875조 삭제 <1990. 1. 13.>
- 902 제876조 삭제 <1990. 1. 13.>
- 903 제877조 J입양의 금지J
- 904 제878조 J입양의 성립J
- 905 제879조 삭제 <1990. 1. 13.>
- 906 제880조 삭제 <1990. 1. 13.>
- 907 제881조 J입양 신고의 심사J
- 908 제882조 J외국에서의 입양 신고J
- 909 제882조의2 J입양의 효력J
- 910 제883조 J입양 무효의 원인J
- 911 제884조 J입양 취소의 원인J
- 912 제885조 J입양 취소 청구권자J
- 913 제886조 J입양 취소 청구권자J
- 914 제887조 J입양 취소 청구권자J
- 915 제888조 J입양 취소 청구권자J
- 916 제889조 J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J
- 917 제890조 삭제 <1990. 1. 13.>
- 918 제891조 J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J
- 919 제892조 삭제 <2012. 2. 10.>
- 920 제893조 J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J
- 921 제894조 J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J
- 922 제895조 삭제 <1990. 1. 13.>
- 923 제896조 J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J
- 924 제897조 J준용규정J
- 925 제898조 J협의상 파양J
- 926 제899조 삭제 <2012. 2. 10.>
- 927 제900조 삭제 <2012. 2. 10.>
- 928 제901조 삭제 <2012. 2. 10.>

- 929 제902조 ㄱ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 930 제903조 ㄱ 파양 신고의 심사
- 931 제904조 ㄱ 준용규정
- 932 제905조 ㄱ 재판상 파양의 원인
- 933 제906조 ㄱ 파양 청구권자
- 934 제907조 ㄱ 파양 청구권의 소멸
- 935 제908조 ㄱ 준용규정
- 936 제908조의2 ㄱ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937 제908조의3 ㄱ 친양자 입양의 효력
- 938 제908조의4 ㄱ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 939 제908조의5 ㄱ 친양자의 파양
- 940 제908조의6 ㄱ 준용규정
- 941 제908조의7 ㄱ 친양자 입양의 취소 · 파양의 효력
- 942 제908조의8 ㄱ 준용규정
- 943 제909조 ㄱ 친권자
- 944 제909조의2 ㄱ 친권자의 지정 등
- 945 제910조 ㄱ 자의 친권의 대행
- 946 제911조 ㄱ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947 제912조 ㄱ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 948 제913조 ㄱ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 949 제914조 ㄱ 거소지정권
- 950 제915조 삭제 <2021. 1. 26.>
- 951 제916조 ㄱ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 952 제917조 삭제 <1990. 1. 13.>
- 953 제918조 ㄱ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 954 제919조 ㄱ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 955 제920조 ㄱ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 956 제920조의2 ㄱ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 957 제921조 ㄱ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 958 제922조 ㄱ 친권자의 주의의무
- 959 제922조의2 ㄱ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 960 제923조 ㄱ 재산관리의 계산
- 961 제924조 ㄱ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 962 제924조의2 ㄱ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 963 제925조 ㄱ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964 제925조의2 ㄱ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 965 제925조의3 ㄱ 부모의 권리와 의무
- 966 제926조 ㄱ 실권 회복의 선고
- 967 제927조 ㄱ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 968 제927조의2 ㄱ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 969 제928조 ㄱ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 970 제929조 ㄱ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 971 제930조 ㄱ 후견인의 수와 자격

- 972 제931조 J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J
- 973 제932조 J미성년후견인의 선임J
- 974 제933조 삭제 <2011. 3. 7.>
- 975 제934조 삭제 <2011. 3. 7.>
- 976 제935조 삭제 <2011. 3. 7.>
- 977 제936조 J성년후견인의 선임J
- 978 제937조 J후견인의 결격사유J
- 979 제938조 J후견인의 대리권 등J
- 980 제939조 J후견인의 사임J
- 981 제940조 J후견인의 변경J
- 982 제940조의2 J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J
- 983 제940조의3 J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J
- 984 제940조의4 J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J
- 985 제940조의5 J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J
- 986 제940조의6 J후견감독인의 직무J
- 987 제940조의7 J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J
- 988 제941조 J재산조사와 목록작성J
- 989 제942조 J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J
- 990 제943조 J목록작성전의 권한J
- 991 제944조 J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J
- 992 제945조 J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J
- 993 제946조 J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J
- 994 제947조 J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J
- 995 제947조의2 J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J
- 996 제948조 J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J
- 997 제949조 J재산관리권과 대리권J
- 998 제949조의2 J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J
- 999 제949조의3 J이해상반행위J
- 1000 제950조 J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J
- 1001 제951조 J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J
- 1002 제952조 J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J
- 1003 제953조 J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J
- 1004 제954조 J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J
- 1005 제955조 J후견인에 대한 보수J
- 1006 제955조의2 J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J
- 1007 제956조 J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J
- 1008 제957조 J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J
- 1009 제958조 J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J
- 1010 제959조 J위임규정의 준용J
- 1011 제959조의2 J한정후견의 개시J
- 1012 제959조의3 J한정후견인의 선임 등J
- 1013 제959조의4 J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J
- 1014 제959조의5 J한정후견감독인J
- 1015 제959조의6 J한정후견사무J

- 1015 제959조의6 J인양후견사무J
- 1016 제959조의7 J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J
- 1017 제959조의8 J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J
- 1018 제959조의9 J특정후견인의 선임 등J
- 1019 제959조의10 J특정후견감독인J
- 1020 제959조의11 J특정후견인의 대리권J
- 1021 제959조의12 J특정후견사무J
- 1022 제959조의13 J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J
- 1023 제959조의14 J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J
- 1024 제959조의15 J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J
- 1025 제959조의16 J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J
- 1026 제959조의17 J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J
- 1027 제959조의18 J후견계약의 종료J
- 1028 제959조의19 J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J
- 1029 제959조의20 J후견계약과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의 관계J
- 1030 제960조 삭제 <2011. 3. 7.>
- 1031 제961조 삭제 <2011. 3. 7.>
- 1032 제962조 삭제 <2011. 3. 7.>
- 1033 제963조 삭제 <2011. 3. 7.>
- 1034 제964조 삭제 <2011. 3. 7.>
- 1035 제965조 삭제 <2011. 3. 7.>
- 1036 제966조 삭제 <2011. 3. 7.>
- 1037 제967조 삭제 <2011. 3. 7.>
- 1038 제968조 삭제 <2011. 3. 7.>
- 1039 제969조 삭제 <2011. 3. 7.>
- 1040 제970조 삭제 <2011. 3. 7.>
- 1041 제971조 삭제 <2011. 3. 7.>
- 1042 제972조 삭제 <2011. 3. 7.>
- 1043 제973조 삭제 <2011. 3. 7.>
- 1044 제974조 J부양의무J
- 1045 제975조 J부양의무와 생활능력J
- 1046 제976조 J부양의 순위J
- 1047 제977조 J부양의 정도, 방법J
- 1048 제978조 J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J
- 1049 제979조 J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J
- 1050 제980조 삭제 <2005. 3. 31.>
- 1051 제981조 삭제 <2005. 3. 31.>
- 1052 제982조 삭제 <2005. 3. 31.>
- 1053 제983조 삭제 <1990. 1. 13.>
- 1054 제984조 삭제 <2005. 3. 31.>
- 1055 제985조 삭제 <2005. 3. 31.>
- 1056 제986조 삭제 <2005. 3. 31.>
- 1057 제987조 삭제 <2005. 3. 31.>
- 1058 제988조 삭제 <1990. 1. 13.>

- 1059 제989조 삭제 <2005. 3. 31.>
- 1060 제990조 삭제 <1990. 1. 13.>
- 1061 제991조 삭제 <2005. 3. 31.>
- 1062 제992조 삭제 <2005. 3. 31.>
- 1063 제993조 삭제 <2005. 3. 31.>
- 1064 제994조 삭제 <2005. 3. 31.>
- 1065 제995조 삭제 <2005. 3. 31.>
- 1066 제996조 삭제 <1990. 1. 13.>
- 1067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1068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 1069 제998조의2 「상속비용」
- 1070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1071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1072 제1001조 「대습상속」
- 1073 제1002조 삭제 <1990. 1. 13.>
- 1074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1075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1076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1077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1078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1079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080 제1008조의2 「기여분」
- 1081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 1082 제1009조 「법정상속분」
- 1083 제1010조 「대습상속분」
- 1084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 1085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1086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1087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자 등의 청구권」
- 1088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1089 제1016조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1090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1091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 1092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1093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 1094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1095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 1096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 1097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1098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 1099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 1100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1101 제1028조 J한정승인의 효과J  
1102 제1029조 J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J  
1103 제1030조 J한정승인의 방식J  
  
1104 제1031조 J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J  
1105 제1032조 J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J  
1106 제1033조 J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J  
1107 제1034조 J배당변제J  
1108 제1035조 J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J  
1109 제1036조 J수증자에의 변제J  
1110 제1037조 J상속재산의 경매J  
1111 제1038조 J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J  
1112 제1039조 J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J  
1113 제1040조 J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J  
1114 제1041조 J포기의 방식J  
1115 제1042조 J포기의 소급효J  
1116 제1043조 J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J  
1117 제1044조 J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J  
1118 제1045조 J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J  
1119 제1046조 J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J  
1120 제1047조 J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J  
1121 제1048조 J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J  
1122 제1049조 J재산분리의 대항요건J  
1123 제1050조 J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J  
1124 제1051조 J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J  
1125 제1052조 J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J  
1126 제1053조 J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J  
1127 제1054조 J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J  
1128 제1055조 J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J  
1129 제1056조 J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J  
1130 제1057조 J상속인수색의 공고J  
1131 제1057조의2 J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J  
1132 제1058조 J상속재산의 국가귀속J  
1133 제1059조 J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J  
1134 제1060조 J유언의 요식성J  
1135 제1061조 J유언적령J  
1136 제1062조 J제한능력자의 유언J  
1137 제1063조 J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J  
1138 제1064조 J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J  
1139 제1065조 J유언의 보통방식J  
1140 제1066조 J자필증서에 의한 유언J  
1141 제1067조 J녹음에 의한 유언J  
1142 제1068조 J공정증서에 의한 유언J  
1143 제1069조 J비밀증서에 의한 유언J  
1144 제1070조 J구수증서에 의한 유언J

- 1145 제1071조 J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J
- 1146 제1072조 J증인의 결격사유J
- 1147 제1073조 J유언의 효력발생시기J
- 1148 제1074조 J유증의 승인, 포기J
- 1149 제1075조 J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J
- 1150 제1076조 J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J
- 1151 제1077조 J유증의무자의 최고권J
- 1152 제1078조 J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J
- 1153 제1079조 J수증자의 과실취득권J
- 1154 제1080조 J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J
- 1155 제1081조 J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J
- 1156 제1082조 J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J
- 1157 제1083조 J유증의 물상대위성J
- 1158 제1084조 J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J
- 1159 제1085조 J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J
- 1160 제1086조 J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J
- 1161 제1087조 J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J
- 1162 제1088조 J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J
- 1163 제1089조 J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J
- 1164 제1090조 J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J
- 1165 제1091조 J유언증서, 녹음의 검인J
- 1166 제1092조 J유언증서의 개봉J
- 1167 제1093조 J유언집행자의 지정J
- 1168 제1094조 J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J
- 1169 제1095조 J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J
- 1170 제1096조 J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J
- 1171 제1097조 J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J
- 1172 제1098조 J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J
- 1173 제1099조 J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J
- 1174 제1100조 J재산목록작성J
- 1175 제1101조 J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J
- 1176 제1102조 J공동유언집행J
- 1177 제1103조 J유언집행자의 지위J
- 1178 제1104조 J유언집행자의 보수J
- 1179 제1105조 J유언집행자의 사퇴J
- 1180 제1106조 J유언집행자의 해임J
- 1181 제1107조 J유언집행의 비용J
- 1182 제1108조 J유언의 철회J
- 1183 제1109조 J유언의 저촉J
- 1184 제1110조 J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J
- 1185 제1111조 J부담있는 유언의 취소J
- 1186 제1112조 J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J
- 1187 제1113조 J유류분의 산정J

1188 제1114조 J산입될 증여J

1189 제1115조 J유류분의 보전J

1190 제1116조 J반환의 순서J

1191 제1117조 J소멸시효J

1192 제1118조 J준용규정J

책의 정보:

도서명:	사변
부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
편집자:	4뿐 출판팀
출판사:	4뿐
출판사 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215, 4층 410호 (항동, 항동아파트)
출판업:	전남목포 2022-7
편집일:	2023-05-01
판형:	국배판/A4
종류:	3판 1쇄
정식출판일:	2023-05-01
가격:	400원
ISBN:	979-11-92669-22-9 (PDF)

안내:

- 본 책자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을 이용하여, 4뿐®에서 원본 법령의 내용을 임의로 제거 변경 추가하여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입니다. 본 책자는 오류가 많으며 오류 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 4뿐®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23년 10월 28일(공인중개사 제34회 시험)을 대비하여 출판하였으나 출판물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이 변경되었으나 본 책자에 적용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을 기준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1.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2. 가사소송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타법개정]

